

대학원장학금 지급 내규 개정

1. 배경 및 필요성

- 전일제 대학원생은 건강보험 가입 시 장학생 자격 상실 →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 인정 필요
- 재직자 대학원생은 직장 퇴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→ 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동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

2. 주요 개정내용

구분	주요 내용
전일제 대학원생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 (4단계 BK21 사업 관리지침 준용) •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• 졸업예정학기 조기 취업자(수업일수 1/4선 이후 취업)
재직자 대학원생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사 후 30일 이내 이직 (동문사랑장학금, 더배움장학금, 산학연장학금 대상) • 단, 산학연 장학금의 경우에는 MOU 체결기관으로의 이직만 인정
대학원생 장학생 예외 인정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도교수가 예외 인정의 적절성(교육 및 연구 수행 가능 여부, 사유의 불가피성 등)을 확인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• 학생지원처장이 사유에 부합하는 제출서류(근로계약서 등) 유/무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

3. 교내 공시 : 2023. 6. 21.(수) ~ 7. 4.(화), 2주간 ※ 공시의견 : 없음

4. 변경 사항

구분	주요 내용
전일제 대학원생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2조(학비장학금) 제2항 신설 • 제11조(조교장학금) 제2항 신설 • 제28조(인하비전장학금) 제2항 신설 • 제49조(연구장학금) 제2항 신설
재직자 대학원생 장학금 자격상실 예외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73조(지급제한) 제1항 제2호 수정, 제3호 수정
대학원생 장학생 예외 인정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2조(학비장학금) 제3항 신설 • 제11조(조교장학금) 제3항 신설 • 제28조(인하비전장학금) 제3항 신설 • 제49조(연구장학금) 제3항 신설 • 제73조(지급제한) 제2항 제3호 신설

5.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학비장학금</p> <p>제2조 (자격) 장학생의 자격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원 전업생으로서 정규석사, 정규통합 또는 정규박사 학위과정 입학생으로 한다. 다만, 반액장학생 중 의과대학에서 추천한 학생(인하대병원 재직자 중 인턴, 레지던트, 전임의, 간호사, 임상강사, 진료교수)은 예외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학비장학금</p> <p>제2조 (자격) ① <좌동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 전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</p> <p>2.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</p> <p>3.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후 조기취업자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[별표3]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조교장학금</p> <p>제11조 (자격) ① 내지 ②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조교장학금</p> <p>제11조 (자격) ① 내지 ② <좌동>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 전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</p> <p>2.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</p> <p>3.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후 조기취업자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[별표3]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인하비전장학금</p> <p>제28조 (자격) 대학원 전업생으로서 정규박사 학위과정 입학생 또는 정규통합 학위과정 5차 재학생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인하비전장학금</p> <p>제28조 (자격) ① <좌동>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 전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u> 1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2.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3.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후 조기취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[별표3]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장 연구장학금</p> <p>제49조 (자격) 대학원 전업생으로서 정규석사 4차, 정규박사 6차, 정규통합 10차 이내 재학생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장 연구장학금</p> <p>제49조 (자격) ① <좌동>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원 전업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u> 1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2.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하는 사람 3.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후 조기취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[별표3]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1장 재직자장학금</p> <p>제73조 (지급제한)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직장 재직자가 퇴사할 때 3. 산학연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입학 시 재직 MOU 체결기관에서 퇴사할 때 <p>② <생략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1장 재직자장학금</p> <p>제73조 (지급제한) ① <좌동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좌동> 2. 직장 재직자가 퇴사할 때, <u>단 퇴사 후 30일 이내 재입사한 경우에는 수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</u> 3. 산학연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입학 시 재직 MOU 체결기관에서 퇴사할 때, <u>단 퇴사 후 30일 이내 MOU 체결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수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</u> <p>② <좌동>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 등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[별표3]의 요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2023. 8. 1.></u></p> <p><u>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 제2조, 제11조, 제28조, 제49조, 제73조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</u></p>

【별표 3】 장학생 예외사유 인정 요청서

	담 당	팀장	부처장	처장
결 재				

제 목	장학금 수혜자격 예외사유 인정 요청서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 청 인	학 과		과 정	석사 • 박사 • 통합 ____차
	학 번		구 분	
	성 명		연락처	

내 용	사유(전일제)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학과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인턴십에 방학기간 중 참여 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예정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후 조기취업자
	사유(재직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퇴사 후 30일 이내 재입사
	사유발생기간	202 ~ 202
	증빙자료	

장학금 수혜자격 예외를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,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20 년 월 일	
신청인	(서명)
지도교수	(서명)
 이하대학교 학생지원처장 귀하	

붙 임	장학금 수혜자격 예외사유 인정 증빙서류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